



고용노동부

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

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
(경유)

제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내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5년간('18 ~ '22) 산업용 리프트 사고사망자는 총 35명, 이 중 적재하중 0.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19명(약 54.3%)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
 -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바,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을 0.5톤 미만까지 확대*하였습니다.
 - * 「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」 개정('24.3.2. 시행)
3. 이에 0.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불임 '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자료'를 송부하오니,
 - 리플렛을 참고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대상 확대, 안전검사 신청 방법 안내 및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 또는 재정지원 신청*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* 재정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불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공단 재정지원 담당자 연락처 통해 문의
 - ** 포항지청 홈페이지(www.moel.go.kr/local.pohang/index.do) '뉴스·소식 > 알림 >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내('24.3.2. 시행)'에서 불임 문서 다운로드 가능

불임 1.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자료 1부.
2. 안전공단 일선기관 관할지역 및 재정지원 문의처 1부. 끝.



최근 5년간('18~'22) 추락·끼임 사망자 35명
“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”
(적재하중 0.5톤미만)

2024. 3. 2.~2024. 9. 2.까지
**적재하중 0.5톤미만
산업용리프트
안전검사 받으세요!**



☑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!!

산업용리프트란?

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

※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기초 바닥면에 고정 설치된 기계

적재하중 0.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

사전컨설팅	안전검사
신청기간 2023. 9. 1. ~ 2024. 3. 1.	최초검사기간 2024. 3. 2. ~ 9. 2.
신청방법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http://miis.kosha.or.kr 신청 · 대한산업안전협회 02-851-6452 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-1277 · 한국안전기술협회 1577-7514 ·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-3089	
내용 안전검사기관이 유선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도 및 검사신청 방법과 검사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재정지원 신청 안내	주요검사항목 · 승강로, 운반구, 권상기 등 기계장치 · 낙하방지장치(3종),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
혜택 안전검사 불합격 시 개선을 조건으로 행정처분(사용중지 등) 유예, 산업용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교체시 비용 70%지원 연계	검사주기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 마다

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처분(과태료 1천만원 이하)을 받을 수 있으니 2024. 9. 2.까지 안전검사를 받고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고용노동부

산업안전보건법

안전보건공단

